

UN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 쟁점 및 과제

- 8월 개최된 정부간회의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문 채택에 실패 -
- 공해 및 심해저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 및 이익 공유 등 논의 -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UN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 합의 실패

- '22년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BBNJ)*에 관한 정부간 5차회의에서 2주간의 협상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공해, 심해저)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약
- 협정 중 가장 민감한 문제는 해양자원을 개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과, '30년까지 지구바다의 30%를 해양보호지역으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이러한 보호지역을 만드는 과정과 공해에서 새로운 활동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고 알려짐.
- UN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정부 간 회의는 감소하는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음.
- 지난 2018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에 2차 및 3차 회의, 2022년 3월에 4차 회의가 진행됐지만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 5차 회의에 대한 기대가 컸음.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 지구 표면의 약 30%만이 육지*이고 나머지 70%는 해양(물)
- * 러시아는 지구 표면의 3.35%를 차지하고, 남극이 2.75%를 차지하고 있음. 캐나다 1.96%, 중국 1.88%, 미국(1.87%), 브라질(1.67%), 호주(1.5%)가 표면적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
- 지구 표면의 27%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국가관할권에 속한 해양
- 지구 표면의 43%는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 속한 해양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논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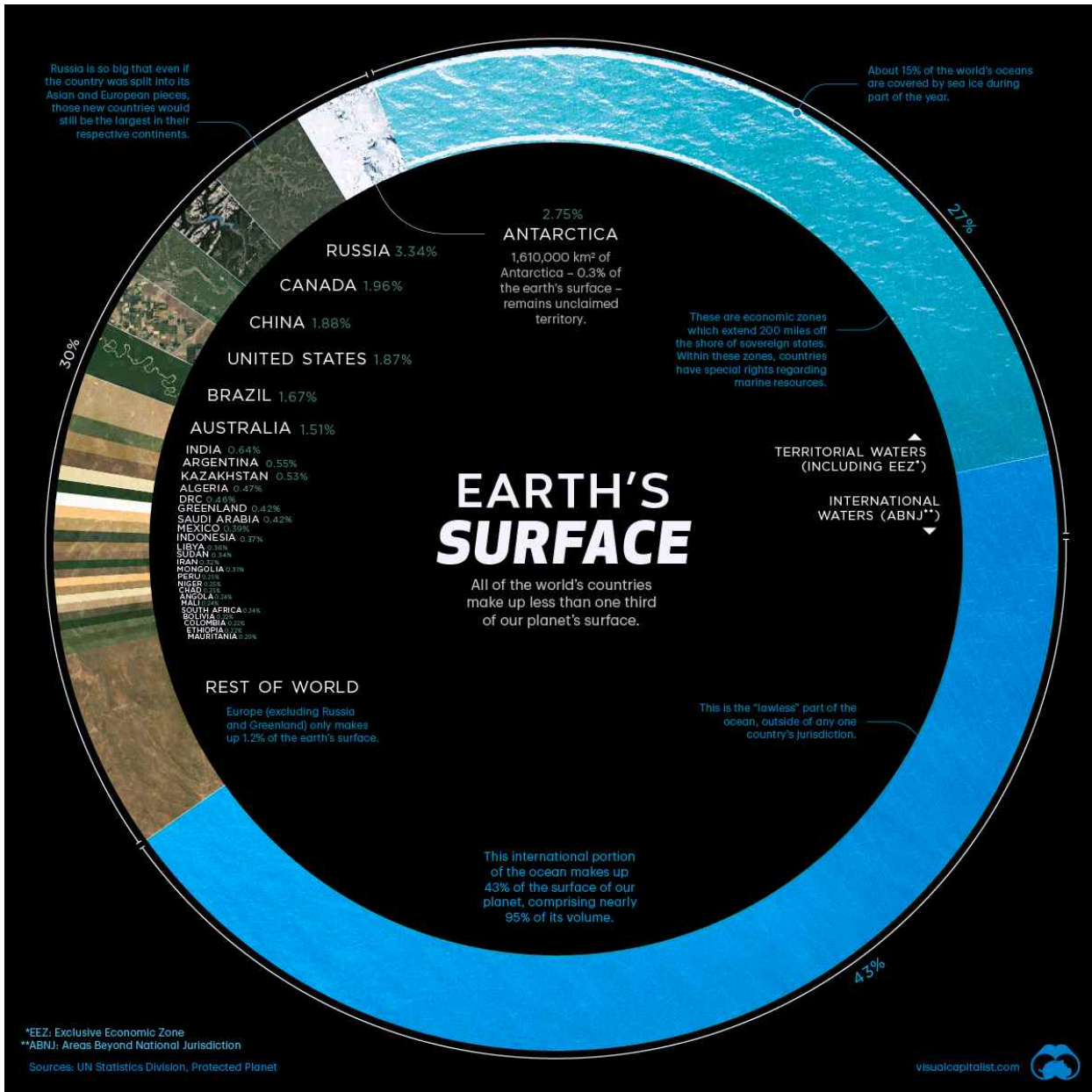
- 20세기 중반까지 해양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해양 오염이 문제가 되면서 국가적 주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바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행동기준이 필요했음.
- 국제사회는 1982년에 바다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Convention on Law of Sea)을 제정함. 이 협약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확립하고 해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최대 200마일(370km)의 독점적인 경계구역을 확보함.

-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채택 시기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해양생물유전자원 등 현재 등장하는 이슈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음. 즉, 협약의 규정으로 수용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가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함.
- 대표적인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규범화 작업임. UN해양법협약은 국가관할권 내 해양생물의 보존, 관리를 규정하고 공해 등 이원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음. 이 문제 역시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양 생물유전자원 등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심을 받게 된 분야임.

◇ BBNJ 주요 쟁점 - 산업계 관련 해양유전자원(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 이 협상의 여러 쟁점에 있어서 국가간 커다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특히, △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 △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등 핵심 의제에 있어서 여전히 국가마다 서로 다른 입장에 기반한 문안들이 제안되고 있음.
- 이 중에서 산업계에 직접 관련된 이슈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공유일 것임.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계에서는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다만,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사전적 접근 규제와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 산업계에서도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됨. 다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접근 절차 간소화 및 합리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된지 40년이 되었음. 우리 정부도 해양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규범인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탄생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IUCN
2. UN session on high seas biodiversity ends without agreement, AL monitor, 2022.08.26
3. Visualizing Countries by Share of Earth's Surface Ocean and coats, IUCN, 2022.8.30.
4.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현황, 외교부, 2020.6.26.
5. 바다의 헌법전, 유엔해양법협약, 해양수산부 블로그